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(영업정지) 변경 공고

경기도 공고 제 2026-5739(2026. 6. 17.)호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)의 변경사항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85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 년 7 월 31 일

경 기 도 지 사

상 호 (대표자)	소 재 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변경내용		근거법령 및 사유
			당초	변경	
주식회사모아테크 (최종업)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 110-21, 2층 (가매동)	건축공사업 (10-4337)	영업정지 ('26. 6. 18. ~ '26. 10. 17.)	영업정지 ('26. 6. 18. ~ '26. 10. 2.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84 조 (대표자의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감경)